

第243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9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2月8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李在五 委員

한자교육진흥법제정안(박원홍 위원, 공동발의함)

-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제정 이전에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의 수정이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앙과 지방에 한자교육심의회를 설치하고 한자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현행 한문 교육과정의 절차와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단일 교과에 국가정책과 재정이 과집중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제정 보다는 현행 교육과정 중에서 특기적성 교육이나 재량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각종 학교 시험이나 수능시험 등에 한문시험이나 한자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으로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안(황우여 의원, 공동발의함)

- 공선법에는 현직 교원들이나 공무원 등의 선거 60일 전 사퇴규정이 있으나 교육감 등의 선거에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출마의 폭을 넓히기 위함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직 교육위원 및 교육감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안(김경천 의원, 공동발의함)

- 학습자의 주거장소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재판

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면, 신고 시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장소가 아니라 교습자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만약 개인의 가정집이 아닌 건물시설로 할 경우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치기준과 같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고등교육법중개정안(박창달 의원, 공동발의함)

- 단순히 시간강사에 대한 생계지원과 같은 단기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한 시간강사 수만큼을 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시간강사 수당을 현실화시킨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고등교육법중개정안(이규택 의원, 공동발의함)

- 산업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전체 19개 산업대학도 모두 합의를 보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법 시행으로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세부준비와 계획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와 대책은?

○金敬天 委員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가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부칙 제2항, 경과조치)
- 특례 적용범위를 법 시행 당시 근무연수 3년 이상인 자로 한정할 것인가?  
특례규정의 취지가 학교급식에 대한 현직영양사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이라는 차원에서 이 법 시행 이후라도 3년간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 특례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측면

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년제 대학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직 영양교사들의 특례 적용은 이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이며, 학사 졸업자와 전문학사 졸업자를 차별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위헌소지의 우려가 있어 학사졸업자와 전문학사 졸업자의 차별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학사 출신도 교사가 되는 유치원 교사나 보건교사의 전례가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학교법인(고등학교 이하에 한정)이 학생 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산하는 학교법인 기본재산 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기본재산을 매입할 수 있고(제35조의2 신설),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시한을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까지 연장함.

○기본재산가액의 30%까지 해산 장려금 지원은 증여세를 우회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조세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영세사립학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2002년 말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97교에 591억 원이나 들어가는 반면, 이들 학교에 대한 해산장려금은 700억 원에 불과하여 영세사립학교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보다 해산장려금을 통한 지원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 예산의 효율적 분배차원에서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해산장려금 지원은 한시적이고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과 선택적 방법이므로 증여세를 우회적으로 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영세사학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해산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로 학교법인의 해산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해산을 유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당해 학교 해산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 관련주체들과 지역공동체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도록 명문으로 의무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

○개인과외교습의 기업화, 고액과외화의 폐단을 시정하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개인과외교습 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장소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과외교습금지에 대한 위헌판결과 배치한다는 검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 등 반사회적인 과외교습에 한하여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개인과외교습 장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친 경우 장소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거나 하위법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과외를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본 법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尹德弘  
(李在五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한자교육진흥법안과 관련하여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 제정 이전에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의 수정이나 전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한자교육진흥법안은 관련 단체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 어문정책(문화관광부 소관)의 변화가 있어야 본 법안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적해 주신대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자교육진흥법안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에 한자교육심의회 설치, 한자교육개발진흥원 설립 등은 현행 한문교육과정과 중복되고, 단일교과에 국가정책과 재정이 집중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자교육심의회

설치, 한자교육개발육진흥원 설립 및 재정지원은 업무의 중복과 예산지원 형평성에 논란의 가능성이 있으며,

- 교육과정에 한자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 한자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 교과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자교육진흥법안과 관련하여

법 제정보다는 특기적성교육이나 재량활동 시간 활용, 각종 학교시험, 수능시험에 한자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부에서는 현행 한자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현재, 초등학교 한자교육 강화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2004학년도 수능부터는 제2외국어와 함께 ‘한문’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공선법에는 현직 교원들이나 공무원 등의 선거 60일전 사퇴규정이 있으나 교육감 등의 선거에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계 인사의 출마의 폭을 넓히기 위함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직 교육위원 및 교육감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공직 사전 사퇴 방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 전문성을 가진 젊고 유능한 인사의 입후보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 공직 사전사퇴 공무원과 예외를 인정하는 공무원(현직 교육감, 교육위원)의 범위와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 현직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교원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선거운동 기간의 행정업무 공백에 대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직 공무원의 교육관련 선거 입후보 시 직무정지제를 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학습자의 주거장소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면, 신고시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장소가 아니라 교습자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만약 개인이 가정집이 아닌 건물시설로 할 경우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치기준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부에서도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제도 보완조치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개인과외교습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가정집이 아닌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일률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 우리 부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내용에 과외교습 장소를 포함하고, 시설과외의 경우에는 교습소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생계지원과 같은 단기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간강사 수만큼 전임교원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시간강사 수당을 현실화시킨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도 대학의 전임교원 확충을 통해 시간강사 자원을 대학교원으로 흡수하는 것과 강사료만으로도 최소한 국민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봅니다.
-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근본대책과 함께 간접 지원시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2004년도 국립대 교수정원 증원 1000명과 국립대 강사료 인상분 203억 원, 시간강사 연구비지원 1000억 원, 시간강사 자원을 연구전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240억 원을 관계부처에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립대 교수증원 256명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고급인력이자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나 고급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우리 부뿐만 아니라 대학, 관계부처, 국회 등이 지혜를 함께 모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전체 19개 산업대학도 모두 합의를 보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법시행으로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세부준비와 계획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견해와 대책은?

- 현재도 사립산업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①교원, ②수익용기본재산, ③교사, ④교지의 대학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하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사립산업대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정원 감축 또는 교원 확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사례로는 경일대학교('97. 3, 舊경북산업대학교), 탐라대학교('98. 3, 舊동원산업대학교), 광주대학교('04. 3 예정, 現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 국립산업대가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학생정원 감축 또는 교원 확보, 정부의 조직·정원·예산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의안번호 2681번의 고등교육법안의 내용처럼 산업대학을 일률적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다면, 교육여건 악화로 대학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학경쟁력 강화·대학특성화라는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우리 부는 산업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대학경쟁력 강화의 기초 위에 산업대학 및 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한 후, 산업대학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金敬天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특례 적용범위를 법 시행 당시 근무연수 3년 이상인자로 한정할 것인가?

- 특례의 취지가 학교급식에 대한 현직 영양사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보다 단기간의 과정을 통하여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라도 3년간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특례

인정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법 시행 당시'로 시점을 규정하지 말고 현 규정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년제 대학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 지난 6월에 영양교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국회심의과정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교사의 기본적인 학력을 대학으로 규정해야한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전문대학을 영양교사 양성기관에서 제외하였으며,
- 이에 따라 본 개정법률안에서도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모든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면서 교육대학원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취득을 그 자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 현직 학교영양사를 위한 자격기준 적용의 특례에서도 기본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는 1년의 비학위과정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2년의 비학위과정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 즉, 교사라는 전문적 특성과 학생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함양을 위해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력에 따라 비학위과정을 차별화한 것으로 1년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차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기본재산가액의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여세를 우회적으로 면제하여 조세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 영세사학 97개교에 대한 2002년도 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591억 원인 반면, 이들에 대한 해산장려금은 706억 원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해산장려금을 통한 지원이 영세사학의 해산을 촉진시킬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재정 운영상 효율적입니다.
- 또한, 해산장려금 지원은 교육용기본재산 매입과 선택적 방법이므로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영세사학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해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 해산특례규정에 의한 해산은 사학정비심사위원

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결정하므로 부작용을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 사학정비심사위원회는 해산의 타당성 여부, 학생·교직원 처리대책 및 잔여재산 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부교육감

- 위 원 : 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15인

- 교육감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5인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률학·회계학·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5인 이내
-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5인 이내

헌법재판소는 고액과외 교습 등 반사회적 과외교습은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과외교습 장소에 대한 제한이 지나친 경우 장소의 제한을 다소 완화하거나 하위법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과외를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견해에 대한 의견은?

○ 고액과외의 기준설정에 대해서는

- 과외비의 전반적인 인상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 다양한 가치관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액과외의 기준설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